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발 의 자 : 도정태 의원외 7명

2. 개정이유

○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라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강화 등이 포함된「지방자치법」일부내용이 개정(2009.4.1)됨에 따라 「지방자치법」의 개정된 취지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제명 보완

나.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조항 신설(안 제5조)

4. 관련법령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

5. 검토의견

□ 발의자, 개정이유, 주요내용, 관련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음.

□ 본 개정 조례안 배경

○ 지방의원의 유급화 취지에 따라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,

○ 지방의원 겸직 시 일정기간 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,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청렴 의무와 품위유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직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「지방자치법」제35조(겸직 등 금지)를 행정안전부에서는 2009. 4. 1일 개정・공포(법률제9577호)하게 되었음.

□ 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 제3항에 의하면 **“지방의원 겸직 시 일정기간 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, 그 방법과 절차는 조례로 정한다”** 라는 규정에 따라 **도정태 부의장님께서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조항 신설(안 제5조)을 내용**으로 한 본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생각됨.

□ 안 제5조 주요내용은

①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【별표2】 서식에 의함.

②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함.

③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·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.

□ 결론적으로

○ 안 제5조를 신설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아울러 직무수행에 있어 윤리성·공정성·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며,

○ 본 개정 조례안의 구성과 체계, 내용 등 **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** 「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」의 규정에 적합하여 **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**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